

의안 번호	250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1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9.(화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보건소장 이현주)

### 가. 제안이유

- 정액제로 운영되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최저임금 상승 등 물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쉽도록 하고,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정액지급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토록 변경(안 제14조)
- 불필요한 조문 삭제
  - 제16조(시행규칙) 삭제
- 별지 서식 관련 조문 정비
  - 제1호, 제2호, 제4호~제6호 서식 하단 ‘조례 제10조→제11조’ 변경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5제5항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주)

## 가. 검토 사항

### ○ 개정배경

- 정액제로 운영되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최저임금 상승 등 물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쉽도록 하고,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○ 내용검토

-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(안 제14호제1항) 정비
  - (현행) 1일(4시간 기준 근무)당 4만원/ 야간, 새벽, 휴일 최대 6만원
  - (개정) 예산의 범위 내 활동수당 지급
- 시행규칙 (제 16조): 불필요한 조문 삭제
- 별지 서식 관련 조문에 맞게 정비
  - 제1호(금연지도원 신청서), 제2호(금연지도원 추천서), 제4호(위촉장), 제5호(금연지도원증), 제6호(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) 서식 하단 「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‘제10조’ → ‘제11조’ 로 변경
  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

## 나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액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, 현행 조례에 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최저임금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 반영을 용이하게 하고,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16조의5(금연지도원의 자격 등)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- 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건강·금연 등 보건 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
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- 1.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
- 2.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

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, 금연의 필요성,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